

# 2023년도 제158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 I. 회의 개요

- 일 시: 2023. 7. 3. 월요일 10:30
- 장 소: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 참 석 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1분과위원회 위원 5명 참석
  - 심의위원: 박재화(분과위원장), 김연희, 송수현, 오영주, 이성엽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 분과위원장

2. 전차(제2023-153회) 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분과위원

3. 안건상정 ..... 분과위원장

### <의결안건>

- 제1호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안건 검토 보고: 한국저작권보호원 보호심의부 김선화 선임

- 제2호 :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

※ 안건 검토 보고: 한국저작권보호원 보호심의부 김태일 주임

4. 폐회선언 ..... 분과위원장

## II. 회의내용 및 결과

### 1. 의결안건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2402건(안건번호 제2023-79764호~82165호)
  - 회의결과: 안건번호 제2023-79764호~79771호(순번 1번~8번)는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출판물의 불법복제물 PDF 파일을 판매한 사안으로, 불법복제물 전송을 적극적으로 매개하는 저작권 침해 정보인 점, 합법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안건번호 제2023-79772호~79788호(순번 9번~25번)는 블로그에서 뮤직컬 영상 판매 및 교환 거래 글을 게시한 사안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정보'로서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는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점,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안건번호 제2023-79789호(순번 26번)는 타인의 출판물 일부를 이용한 사안으로, 인용 또는 공정이용으로 저작재산권이 제한될 것으로 보이는 점, 게시글의 성격상 원저작물을 대체하거나 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부결함.

안전번호 제2023-79790호~79791호(순번 27번~28번)는 웹하드에 불법 복제물을 게시한 사안으로, 합법 시장에서 제공 중인 저작물을 무단으로 이용 중인 바 저작물의 시장 및 가치에 미칠 영향이 우려되는 점을 고려하여 가결함.

안전번호 제2023-79792호~79793호(순번 29번~30번)는 링크를 통해 불법복제물을 제공하여 저작권 침해행위를 방조하는 '저작권 침해 정보'로 시정권고의 대상성이 인정되는 점,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시정권고로 가결함.

그 외 안전번호 제2023-79794호~82165호(순번 31번~2402번)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심의안건 게시물 4,581건은 삭제 또는 전송 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 제2호: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

- 주요내용: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이미 접속차단의 시정요구를 한 해외 저작권 침해 사이트 3개의 대체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총 411개의 URL 정보에 관한 '구글' 검색결과 제한 협조 요청 여부(안전번호 제 2023-14495호~14905호)
- 회의결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접속차단 조치한 해외 저작권침해

사이트의 대체사이트 3개에 접속할 수 있는 411개의 URL 정보에  
관해 검색결과 제한 조치를 요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가결함.

### Ⅲ. 회의 의사록

#### 1. 개회선언

- 박재화 분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3년 제158회 저작권보호심의  
의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 2. 전차(제2023-153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박재화 분과위원장: 전차 회의록 공개여부에 관해 의견을 구함. 제1  
호 안건 회의록과 관련하여 민원 관련 부분, 온라인서비스제공자, 권  
리자, 저작물명, 게시물 제목 등이 노출된 부분의 공개 여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원안대로 비식별 처리에 동의함.
- 박재화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전차 회의록에 대해 이상 없음을 확인  
하였고, 제1호 안건 부분을 비식별 처리 후 공개하는 것으로 의결함.

#### 3. 안건상정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김선화 선임: 심의위원님들께서는 PC에 접속하여 금일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권리자,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등 목록을 직접 확인해 주시고, 저작권법 시행령 제67조의4 및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정 제11조에 따른 제척 사유 해당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 위원 전원: 해당 없음.
- 박재화 분과위원장: 제2023-158회 시정권고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선화 선임: 이번 심의안건은 일반인이 신고하거나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발견된 불법복제물에 대하여 보호원이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시정을 권고하기 위하여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것으로, 31개 온라인서비스의 이용자들이 게시한 4,632건의 복제물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해당 이용자들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에 관한 심의임. 관련 법령 및 심의 기준은 검토보고서의 내용으로 대신하겠음.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1번 내지 8번은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를 요청한 건으로, 중고거래 사이트 '☆☆☆☆'와 '●●●●'에서 대학 교재 또는 문제집의 스캔 파일을 판매하고 있는 사안 총 10건임.  
각 심의대상 게시물이 불법복제물의 전송을 적극적으로 매개하고 그로부터 영리를 얻고자 하는 '저작권 침해 정보'로서 시정권고의 대상인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점 및 판매중인 불법복제물이 각 원저작물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모두 시정권고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인정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

권고만을 함이 타당함.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전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박재화 분과위원장: 순번 1번 내지 8번,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거래중인 출판 불법복제물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함.
- 박재화 분과위원장: 계속 심의해왔던 안전으로 특별한 의견 없으실 것으로 생각됨. 원안대로 가결하겠음.
- 참석 위원 전원: 가결에 동의함.
- 박재화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1번 내지 8번은 시정권고를 가결하되,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 김선화 선임: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9번 내지 25번은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를 요청한 건으로, ◆◆◆ 블로그에 뮤지컬 촬영물 등 영상 판매 및 교환을 홍보하는 글을 게시한 사안 총 19건임.  
각 심의대상 게시물은 ◆◆◆ 블로그에 ‘▽▽▽ ▽▽ ▽▽ ▽ ▽▽’, ‘♣♣ ♣♣♣ ♣♣ ♣♣’ 등의 제목으로 뮤지컬 밀캠, DVD, 온라인 생중계 녹화 등의 영상을 교환·판매한다는 내용을 게시하였음. 게시물에는 게시자가 보유한 녹화물 등의 제목, 공연일, 출연자의 목록이 다량 게시되어 있음.

각 심의대상 게시물이 다수의 뮤지컬의 불법복제물을 판매 또는 교환하였거나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이러한 불법복제물을 제공하려 한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각 심의대상 게시물은 불법복제물의 전송을 적극적으로 매개하는 '저작권 침해 정보'에 해당하여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는 "불법복제물등"으로 볼 수 있으며, 각 원저작물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시정권고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인정되어 가결 의견임.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전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박재화 분과위원장: 순번 9번 내지 25번 뮤지컬 영상 판매 및 교환 게시물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함.
- A 위원: 모두 최근 게시물로 가결에 동의함.
- 박재화 분과위원장: 더 의견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겠음.
- 참석 위원 전원: 가결에 동의함.
- 박재화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9번 내지 25번은 가결하되 이미 삭제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 계속 보고하여 주시기 바람.
- 김선화 선임: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26번은 민원인이 신고한 사안으로, 만화에 대한 설명 또는 분석을 작성한

블로그 게시물 총 1건임.

심의대상 게시물은 만화 '○○○'에서 특정 주제에 대해 자신의 상상을 이용한 대략의 스토리를 기재하며 그 분석과 근거를 제시함에 있어 해당 저작물의 일부를 이용하고 있음. 게시물의 내용은 해당 저작물의 특정 회차에 대한 설명이나 리뷰와는 달리, 해당 저작물에서는 공표되지 않은 내용의 예상을 자신만의 논리로 풀어나가면서 해당 저작물을 임의 발췌한 부분을 캡처·편집하여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원저작물의 특정 스토리나 회차, 캐릭터를 요약하고 그에 대한 감상을 서술한 일반적인 리뷰와는 성격이 조금 다름.

심의대상 게시물은 그 작성에 있어 권리자의 허락을 얻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인용 또는 공정이용으로서 저작권재산권 제한사유에 해당할 수 있음.

심의대상 게시물과 같은 게시물은 만화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전하고 흥미를 유발하는 정도의 효과만 있을 뿐 인용으로서 공정한 범위를 벗어난다거나, 적어도 원저작물 자체를 대체하고 원저작물의 시장 또는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한다고 보기 어려움. 저작권재산권을 침해한 불법복제물로서 시정권고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어 부결 의견임.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전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박재화 분과위원장: 순번 26번 만화에 대한 글을 작성한 블로그 게시물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함.
- B 위원: 게시글에 광고도 없고 검토보고서의 의견에는 동의함. 그래

도 심의대상 게시물을 부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간 심의할 때 기준으로 삼았던 항목들을 고려해야 될 것으로 보임.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이용의 목적 및 성격,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원저작물의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이 네가지 항목이 고려 사항에 해당함.

- C 위원: 분량으로 보자면, 원저작물 전체 분량이 100여권에 이르는 것을 고려할 때 저작물 전체에서 이용된 부분이 차지하는 부분은 극히 일부라고 보아야할 것임. ◆◆◆에서도 열컷 정도를 인용하는 것은 허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 A 위원: 이용 목적과 글의 성격도 리뷰와 같이 저작물에 대한 본인의 감상을 기재한 것이라고 봐야할 것임.
- B 위원: 게시글에서 본인의 감상은 일부이고 대부분 원저작물의 캡처 이미지로 대신하여서 애매한 부분이 있음.
- D 위원: 원안대로 부결하는 것에 동의함. 심의대상 게시글은 아직 출판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독자들끼리 상상을 가미해 창작해서 작성한 것으로, 합법시장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움.
- B 위원: 부결하는 것에는 동의함. 다만 보고서에 그 부결 근거나 우리가 의결하는 근거를 기준에 의거해서 보다 명확히 했으면 한다는 의견임.
- E 위원: 특정 부분에 대해 쓴 것이 아니라 방대한 전체 분량에서 임

의로 여기저기서 이용하였으므로, 합법 시장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음. 부결에 동의함.

- 박재화 분과위원장: 추가 의견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음.
  
- 참석 위원 전원: 부결에 동의함.
  
- 박재화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26번에 대해서는 부결함.
  
- 김선화 선임: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27번 내지 28번은 민원인이 신고한 사안으로 웹하드에 만화 불법복제물 총 2건을 게시한 사안임. 각 심의대상 게시물은 국내 정식 번역 출간된 일본 만화의 상당량을 이미지 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형태로 웹하드에서 판매중인 사안임.  
합법 시장에서 제공 중인 저작물을 무단으로 이용 중인 바 저작물의 시장 및 가치에 미칠 영향이 우려되는 점을 고려하여 모두 시정 권고하는 것이 타당함.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전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박재화 분과위원장: 순번 27번 내지 28번, 웹하드에서 제공중인 만화 불법복제물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함.
  
- 참석 위원 전원: 가결에 동의함.

- 박재화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27번 내지 28번에 대해 시정권고로 가결하겠습니다.

- 김선화 선임: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29번 내지 30번은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를 요청한 것으로, '○○○' 블로그에 불법복제물 제공 사이트로 연결되는 링크를 게시한 사안 총 19건임.

각 심의대상 게시물은 만화 '♡♡ ♡♡♡ ♡♡♡♡♡', '★★★★ ★★'의 불법복제물로 연결되는 직접링크를 게시하고 있음.

각 심의대상 게시물의 직접 링크를 통해 연결되는 사이트는 '■■■■■■■■'로, 대한민국의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 해외 온라인 서비스이고, 2022년 보호원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구글'에 검색결과 제한을 요청한 바 있는 저작권 침해 해외사이트의 대체사이트로 확인됨. 심의대상 게시물들은 링크를 통해 불법복제물을 제공하여 저작권 침해행위를 방조하는 '저작권 침해 정보'로 시정권고의 대상성이 인정되는 점,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시정권고의 필요성 또는 타당성이 인정됨.

(해당 안건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건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화 분과위원장: 순번 29번 내지 30번, 저작권 침해 해외사이트로 연결되는 경로를 제공 중인 블로그 게시물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함.

- 참석 위원 전원: 가결에 동의함.
- 박재화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29번 내지 30번에 대해 시정권고로 가결함.
- 김선화 선임: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31번 내지 2402번은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건으로, 총 4,581개임. 심의대상 게시물 모두 불법 복제한 영상물, 출판물, 음악, 게임 등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  
(드라마 '래빗홀'의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31번은 웹하드에서 판매중인 드라마 '래빗홀'임. 2023. 3. 27.부터 티빙을 통해 제공 중인 드라마의 8부작 전체 분량을 다운로드 형태로 판매중인 사안임.  
(영화 '더 라스트 오브 어스'의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91번은 영화 '더 라스트 오브 어스'로, 2023. 1. 15.에 미국에서 방영된 드라마로, 국내 미방영된 드라마의 9부작 전체 분량을 웹하드에서 제공 중임.  
(영화 '플래시'의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1092번은 영화 '플래시'임. 2023. 6. 14.에 극장 개봉하여 현재 상영중인 최신 영화의 2시간 14분 전체 분량을 웹하드에서 판매중인 사안임.  
해당 3건을 포함하여 순번 31번부터 2402번까지 총 4,581개의 심의대상 게시물 모두 불법으로 복제한 영상물, 출판물, 음악, 게임 등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으로,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가결 의견임.  
(해당 안건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건표

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박재화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모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하시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해당 안전은 모두 불법 복제한 영화, 방송, 출판, 만화, 음악, SW, 게임 등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으로 모두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박재화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31번 내지 2402번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고,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3-79764호~79788호(순번 1번~25번)에 대해 가결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하고, 안전번호 제2023-79789호(순번 26번)에 대해 부결하고, 안전번호 제2023-79790호~79793호(순번 27번~30번)에 대해 가결하고, 그 외 안전번호 제2023-79794호~82165호(순번 31번~2402번)에 대해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정권고를 가결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함.”

o 제2호: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

제2호 안건에 관한 회의록 14쪽부터 16쪽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비공개로 결정함.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23-14495호~14905호(순번 1번~411번)의 구글 검색결과 제한을 가결함”

4. 폐회 선언

o 박재화 분과위원장이 제158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23년 제158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3. 7. 10.

분과위원장 박재화

위원 오영주

위원 이성엽

위원 송수현

위원 김연희